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 야간약국의 관리 (안 제5조)
-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의약품 등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2020.5.19. 제정하고 2021년 10월 현재 37개 약국을 지정,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는 1개 약국(여의대방로 197, 신길7동)이 참여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 중랑구, 노원구 3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개소의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노원구는 시비 지원금 외 구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 및 지정,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에 따른 업무 수행과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 준수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 이용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공공 야간약국 운영을 통해서 증상의 경증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경증환자가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라. 야간약국의 관리 (안 제5조)

마.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10. 7. ~ 10.12.)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